|  |  |  |  |  |
| --- | --- | --- | --- | --- |
| **계 약 서 (M O U)** | | | | |
| 계  약  내  용 | 갑 | 디자인그룹 나인 | 사업자등록번호 : 105-11-29481 | |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1701호  전화번호 : 02-706-9974 | | |
| 을 | 김지훈 | | 주민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계약기간 | 2015년 01월15일 ~ 2020년 01월14일 (5년간) | | |
| 분배비율 | -. 근로 (파견, 계약직, 정규직) : 을의 수수료 부담 없음  -. 용역 (재택, 프로젝트, 이면 계약시) : 갑(30%), 을(70%) 분배 | | |
| 지급방법 | -. 근로 계약 시 : 을의 급여는 을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수급  -. 용역 계약 시 : 갑이 원청으로 부터 수금 후, 을에게 일주일 이내 분배 후 지급 | | |
| 계약조건 | 1. 갑과 을은 상호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하여, 갑이 중개를 한 프로젝트 및 업체에서   을의 프로젝트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용역의 수입금을 위의 계약기간(5년) 동안 3:7의 비율로 나누어서 분배한다. 또한 신규로 진행한 프로젝트나 중개 받은 업체로부터 연관돼 이루어지는 연속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1. 갑이 을에게 중개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을은 신의와 성실을 다해 프로젝트에 임하여야 하며, 처음과 중간, 완료 등 3차례 진행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해야 하고,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안과 결과물을 갑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갑은 을의 용역 프로젝트 저작물 및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다. 2. 갑이 을에게 중개한 프로젝트 수행 미진, 납기 지연 및 저작권, S/W라이선스 보유 등 문제 해결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중개에 있어 갑이 손해를 받게 되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4. 갑이 중개한 프로젝트 및 업체에 대해서는 갑의 허락 없이, 정보를 누설 할 수 없으며 양도 및 인계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겼을 때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 |
| 디자인그룹 나인과 계약대상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을)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을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 첨부)  2015년 01월 15일  디자인그룹나인 대표 이 성 구 귀하  김 지 훈 (인) | | | | |

담당자 : 황연선 팀장